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공청회 자료집

일시 2015년 12월 10일(목) 14:30~17:30

장소 오송컨벤션 아이비홀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안)」 공청회

14:30 ~ 15:00	➤ 등 록
	➤ 개 회 사회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0 ~ 15:20	➤ 인사말 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 발표 및 토론 사회 이순래 (원광대학교 교수)
15:20 ~ 15:50	발표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안)”
15:50 ~ 16:30	토론 이윤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변호사) 권성중 (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16:30 ~ 17:30	➤ 질의응답 사회 이순래 (원광대학교 교수)
17:30	➤ 폐회 사회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선행연구	1
2. 학생징계 일반	3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안)	7
4. 참고문헌	22
〈부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3
〈부록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장 원 경 · 이 경 상

2015. 12. 10. 14:30
오송컨벤션센터 아이비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선행연구

양정기준 수립

- 폭력유형 분석

기본유형

가중요소

감경요소

신체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 사이버/매체

- 점수 산출

폭력유형
기본점수

폭력유형
세부사항

가중요소

감경요소

총점

가해학생 조치 기준: 점수에 따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부과

양정기준의 문제점

- ① 형법과 달리 학교폭력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학교폭력의 구성요건
-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라는 측면에서 형사법과 목적을 달리함
- ③ 계량지표에 따르는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조치를 결정하게 되어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학생징계 일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징계와 ‘교육상 필요’

일반이익

일반학생의
교육적 이익의 보호



규범 위반 학생의
교육적 이익의 보호

특수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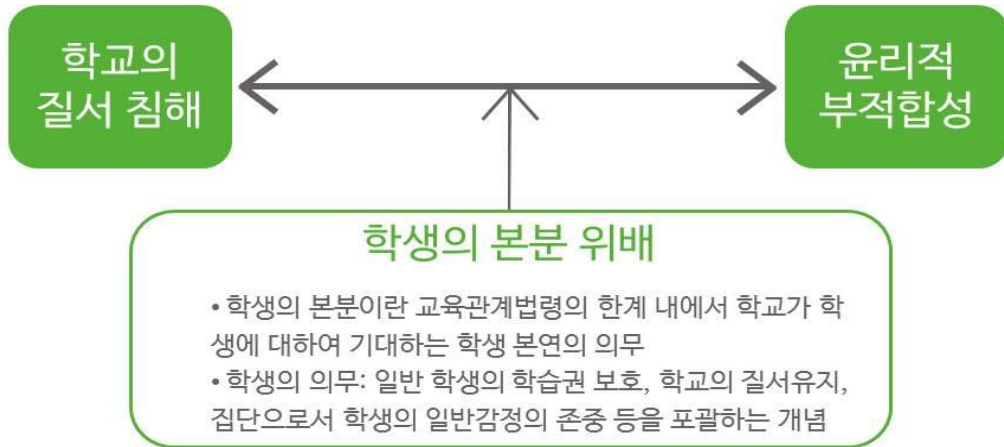
가부장적 개입에 의한
교육적 이익의 충족



학생의 자유에 의한
교육적 이익 추구의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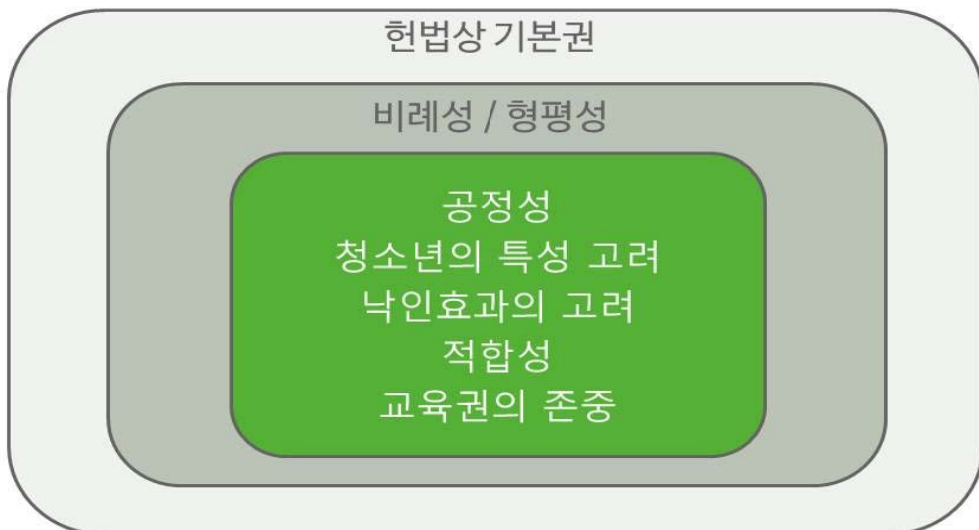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분석

‘교육상 필요’의 실직적인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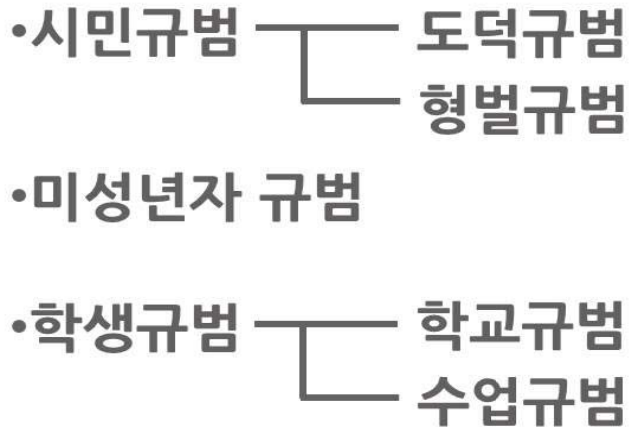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분석

학생징계의 한계 및 기준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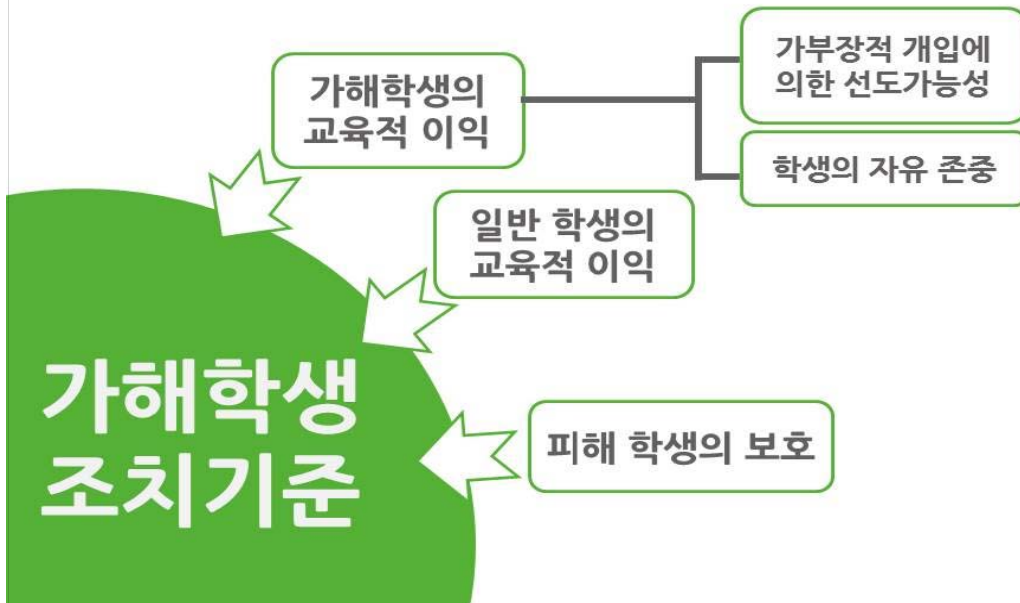
학생징계규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및 선도조치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분석

가해학생 조치와 '교육상 필요'



연구방법

- 각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198개교 선생님들의 응답 분석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가해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회부된 50여건의 사건 검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안)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서면사과

-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학생에게 경고가 필요할 때
- 가장 경한 조치
-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경미,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 노력
- 가장 경미한 조치이며, 다른 조치와 병과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 가벼운 조치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심하지 않고 우발적인 장난리라고 판단될 때 내리게 됨
- 일회성, 단순성, 실수
- 전치 1주 이하, 1:1의 상황: 5회 미만의 지속성
- 일회성 단순 폭력으로서 추가적인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왕따 또는 집단폭력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경우: 경미한 사건으로서 피해학생이 진료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 1회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가 현저할 경우
- 우발적, 일회성, 평소 친분 정도, 재발 우려 없을 때, 경미한 사건, 양측 보호자의 합의
- 1회적 언어폭력 사안 및 상처가 없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주로 조치함.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고 직접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
-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사자 간의 감정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주의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사과의 의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과하지 않도록 함.

부과기준

-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모두 매우 낮고
-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크고
- 3 서면사과를 통하여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으며
- 4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접촉금지 등

- 사안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상대 학생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등
- 모든 폭력 사안의 가해자에게 적용
- 가해학생에 대해 두려워할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꺼리는 경우,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의함
-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히 나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힘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전일 경우, 제2호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경고의 의미의 조치를 내림
- 가해학생의 재발 가능성, 주변 친구들의 협박 및 분위기 조성 고려해서 내림
- 가해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보복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자주 만나거나 함께 놀던 학생이던 경우 다시 만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
-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 경미하지만 다툼이 잦은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질 때
- 보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속성에 의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말로 상대를 위협하고 불쾌하게 한 경우, 신체적 폭력 증거 없는 경우
- 서면사과만으로는 선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중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조치. 아울러 또다시 추가적인 보복행위 등이 우려될 경우 병과하기도 함.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기회를 주는 조치.
- 가해학생이 자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구체적인 부과기준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모두 낮고
-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크고
- ③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으나
-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내 봉사

- 폭력 사건 중,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할 때
- 쌍방 폭력이고, 폭력 정도가 경미할 때
- 고의성이 짙고 지속성이 긴 경우 조치, 그러나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피해학생의 피해가 경미(전치 2주 이내)하고 가해학생의 반성이 뚜렷하며 가해행위가 경미한 경우
- 학교폭력 중 지속적이거나 상황이 심각할 때,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의 선도가 필요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련 학생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학생 접촉 시 문제가 없을 때
- 우발, 돌발적 사건,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지속성이나 폭력성이 있는 경우
- 가해행위의 심각성이 경미하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여 교내 봉사만으로도 선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해당함
-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나 일방적인 폭력일 경우
- 서면사과로 끝나기에는 사건이 중하다고 여겨질 때, 반성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중 1개 이상이 포함될 때
- 자치위원회에 1번 회부되어 피해학생에게 다소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가장 가벼운 벌의 형태
- 일회성, 우발적 폭력행위, 쌍방의 우발적 폭력행위
- 고의성이 없고 개선의 의지가 보일 때
-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선도목적 및 특성

-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가해학생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조치.
-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폭력이 아니라 선행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주의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유형의 봉사활동은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구체적인 부과기준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요소만 그 정도가 심하고
- ②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 ③ 학교에서의 봉사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고
-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4호 사회봉사

● 사회봉사

- 폭력의 정도가 심할 때: 폭력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 3호의 조치보다 고의성, 지속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부과
- 사안이 무거운 경우
- 일방적인 집단 폭력일 경우, 일방적 폭행으로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 지속적인 피해 사례 확인, 피해 사례 경미, 이전에 비슷한 사안으로 교내봉사 5일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명확한 경우, 교내봉사 처벌을 받은 경우보다 피해자의 상태가 좀 더 중하며, 피해자가 회복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 사안이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벌, 피해신고 학생과 떨어져 있게 되는 장점과 3호에 비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등 실효성이 큼. 치료 및 상담이 필요: 경미한 사안이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적을 때
- 경미하지는 않으나 학생이 뉘우치는 경우
- 자치위원회에 2번 회부되어 피해학생에게 다소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 있을 경우
- 다회성, 우발적 폭력행위, 계획된 일회성 폭력행위, 지속적인 따돌림, 소셜네트워크 루머 게시 및 유포
- 가해자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거나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을 두 번째 유발한 경우

선도목적 및 특성

- 학교 밖의 낯선 장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조치.
-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가해학생의 폭력에 대한 인식,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학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식 등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구체적인 부과기준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 요소가 그 정도가 심하고
- ②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 ③ 사회봉사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고
-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특별교육 등

- 피해학생의 피해가 중상 이상이고 가해학생의 반성이 미흡한 경우와 가해학생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경우, 집단 폭력의 경우 취하는 조치
- 경미한 경우부터 중한 경우까지 특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피해 사례 확인, 피해 사례 중 이전에 비슷한 사안으로 사회봉사 5일 이상 처분받은 경우
- 학교폭력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가해학생의 교육 및 선도가 가능한 경우
-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명확한 경우, 다른 조치와 함께 가해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병행 조치할
- 심각한 학교폭력에 주로 조치할
- 자치위원회에 3번 회부되어 피해학생에게 다소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가해학생의 반복성, 가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해학생 대부분 선도차원에서 특별교육시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조치할.
- 잘못의 정도가 중하고 가해학생이 심리적, 정신적, 신체상의 문제로 잘못을 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심한 경우 원인을 찾아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 사안이 지속적이며 교육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습관화된 행동의 수정을 위해 필요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구체적인 부과기준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고
- ②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정도가 낮으며
- ③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고
-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6호 출석정지

● 출석정지

- 일정 시간 같이 어울리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잘못이 매우 큰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 강제전학을 위한 예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 긴박한 상황, 추가적인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대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을 때, 가해학생의 격리를 통해 관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발 방지
-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선도조치 이후 재범을 하였을 경우
- 3,4호의 조치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또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주로 부과함: 가정에서도 학생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호의 조치와 함께 부과하여 개선을 꾀함
- 3-5호 조치를 받은 후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방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입원 또는 2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요구될 경우
- 지속적인 피해사례 확인, 피해사례상 이전에 비슷한 사안으로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등 사안이 심각하고 중할 때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심리적으로 폭력성이 강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 사건의 가해가 2번째 이상일 경우
-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안이 중대할 때 처하는 별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숙의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조치를 통하여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가 진학 등 자신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구체적인 부과기준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고
- ②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정도가 낮으며
- ③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낮으나,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7호 학급교체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이 요청할 때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생활할 때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
- 폭력, 따돌림 등 지속성과 빈도 등에 따라 다름
- 학급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경우
- 피해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전학보다 낮은 수위로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에서의 마지막 학업기회 제공, 사안이 큰 경우 그 사안에 대해 반성의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학생 폭행,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또는 집단성이 있을 때
- 자치위원회에 2번 회부되어 같은 피해학생에게 다소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반복했을 경우 (단, 교육적 반성의 기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가해자가 폭력을 주도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경우
-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 가해학생의 변화보다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조치: 중한 사안
-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적
- 피해 정도가 경미하나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낄 경우
- 성관련 루머 유포 등을 통한 폭력행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학생의 공격적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의 학습 환경을 바꾸어 주고, 주변 학생들에게 가해학생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가해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를 통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
- 가해학생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구체적인 부과기준

-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높으나
- 2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 3 학급교체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 4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집단 따돌림이나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함.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8호 전학

● 전학

- 한 명을 분리시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을 할 때, 지금 어울리는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때, 비슷한 사안의 징계가 2회 이상 연속될 때, 종류가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선도위원회,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 피해자의 두려움이 커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폭력, 따돌림 등 지속성과 빈도 등에 따라 다름
- 학급교체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임
- 학교교체시 문제가 해결될 경우
- 피해자의 완강한 요구 및 사안 판단으로 전학
- '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일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집단성에 비추어 생각하여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 정상적인 생활지도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1-7호의 조치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회박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가해자의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3번 이상 회부되어 같은 피해학생에게 다소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반복했을 경우 및 1번 회부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교육적 반성의 기회를 줬도 반성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학교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수차례 지도 후에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조치
- 2회 이상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범죄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 피해자의 불안증세
- 흉기 등으로 전치 2주 초과 상처를 입었을 때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내에서의 교육 변화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
- 가해학생의 학습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가해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 가해학생의 전학으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구체적인 부과기준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매우 높고
- ②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 ③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제5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 ④ 제1호-제7호까지의 처분으로 선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 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해학생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의 경우에는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학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학교폭력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함.

제9호 퇴학처분

● 퇴학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사회통념상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유발하였고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하는 조치
- 가장 중한 벌이라고 생각됨,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고의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가해학생이 변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학부모나 가해학생이 선도에 대한 긍정적 의지 부족
-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에서 더 조치를 내릴 수 없을 경우
- 차후 생길 보복 및 부작용에 대한 예방차원
- 학교 제도가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아임을 공식화, 학생을 계도하고 훈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조치일 수 있음
-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함
- 학교폭력행위가 더 이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정도나 동기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교육기관에서 선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해자의 회복을 돕지 못함, 가해자의 사회적 선도에 도움이 안 됨
-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관련 학생 간 갈등 관계가 회복의 가능성이 적어 재발, 보복의 우려가 큰 사안, 조치사항 2호-8호까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경우

선도목적 및 특성

- 가해학생의 심각하고 반복적인 폭력행위로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 어렵고, 가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구체적인 부과기준

* 퇴학처분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 가해학생이 소년사법처리절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경우
- 가해학생이 형사사법처리절차에 따라 구속된 경우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강간한 경우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피해학생이 사망한 경우

조치기준 부과 원칙

- 제17조 제1항의 조치기준별 선도목적 및 특성에 따라 가급적이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한 가지 조치를 부과함.
-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하여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 제17조 제1항의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조치가 아니라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부과함.

참고문헌

- 박성혁 · 박선운, 법교육 관점에서 본 학생징계 시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09).
- 정진환, 학생 체벌 및 징계의 법리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제4호 (1996).
-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제1호 (1996).
- 조석훈 · 김용,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 표시열, 교육법 - 이론 · 정책 · 판례 -, 박영사 (2008).

참고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 · 중등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898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3.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전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목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 [본조신설 2012.1.26.]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09.5.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3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

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898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⑦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11.>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1.>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6.11.>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2.9.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

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5조(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 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부 칙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공청회 자료집

인 쇄 : 2015년 12월 9일

발 행 : 2015년 12월 9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전화 044) 415-2159

발행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

인쇄처 : (주)계문사(02-725-5216)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